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2호 2018. 3. 7(수)

선 람	기관의 장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392호 도로공고(변경) ----- 1
- 남원시 공고 제2018-411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18-418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8

예규

- 남원시 예규 제27호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 16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 2018 - 392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4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4건)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5-2 1	남원시 어현동 607-9(임)	황*근	2015-건축과- 신축신고-352	80	15	1262	남 원 시 어 현 동 산 105	남 원 시 어 현 동 607-20	등록 전환 측량에 따른 지번·면적 변경
2016-1 3	남원시 어현동 607-12(임)	황*근	2016-건축과- 신축신고-277	110	9.86	1085	남 원 시 어 현 동 산 105	남 원 시 어 현 동 607-19	등록 전환 측량에 따른 지번·면적 변경
2016-2 3	남원시 어현동 607-14(임)	황*근	2016-건축과- 신축신고-399	60	9.72	583	남 원 시 어 현 동 산 105	남 원 시 어 현 동 607-18	등록 전환 측량에 따른 지번·면적 변경
2017-1 7	남원시 어현동 607-16(임)	황*근	2017-건축과- 신축신고-364	55	9.58	527	남 원 시 어 현 동 산 105	남 원 시 어 현 동 607-17	등록 전환 측량에 따른 지번·면적 변경

남원시 공고 제 2018 - 411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춘향문화선양회장 유고 시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차질 없는 춘향제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를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선양회장이 유고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로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8. 3. 7. ~ 2018. 3. 28.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 063-620-61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준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8. 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 광 과 장

1. 개정이유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춘향문화선양회장 유고 시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차질 없는 춘향제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를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되, 선양회장이 유고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 . ~ 2018. . . (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춘향문화선양회장”을 “춘향문화선양회장(이하 “선양회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선양회장 유고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춘향문화선양 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위촉한다.</u></p> <p>③ · ④ (생 략)</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춘향문화선양 회장(이하 "선양회장"이라 한다)</u>----- <u>위촉하</u> <u>되, 선양회장이 유고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 공고 제2018-418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조항 삭제 (안 제5조제4호)
- 나. 무상 사용기간 내용 개정 및 단서조항 삭제 (안 제17조)
- 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변경 (안 제38조)
 -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 이자 납부기간 변경 : 10년 → 20년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기간 변경 : 5년 → 10년
- 라. 청사의 부지 조항 삭제 (안 제46조)

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변경 (안 제63조의2)

- 과오납금이자율은 시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27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르되”를 “따르고,”하고,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 제2항 중 “10년”을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자율을”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전단 중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를 “20년 이내로”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2 중 “연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동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p> <p>나. 읍·면 지역에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u>무상사용기간</u>은 영 제17조에 <u>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p> <p><u><단서 신설 2014.4.2.></u></p>	<p>제17조(무상사용기간) ----- ----- <u>무상사용 기간</u>----- -- <u>따르고, -----</u> <u>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단서 삭제></u></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수 있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
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
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
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3월 07일

남원시 예규 제 27 호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도로”란 포장면이 폭원 6미터 이상이며 왕복 2차로 도로를 말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100미터”를 “100미터로 하며, 전체 개발행위 규모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0미터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와 인·허가 서류를 구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말하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한다.</p> <p>4. (생략)</p>	<p>제3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도로”란 포장면이 폭원 6미터 이상이며 왕복 2차로 도로를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다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100미터로 하며, 전체 개발행위 규모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0미터로 한다.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